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38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 강준현·김남근·김기표

오세희 • 박범계 • 박용갑

채현일 • 유건영 • 조인철

김 윤 • 박희승 • 복기왕

이기헌 • 민병덕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촌 내 빈집 해체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 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 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0 조제3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##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해체계획서"를 "해체계획서(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해체계획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제2조(해체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개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・	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③
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	
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	
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	
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	
따라 검토된 <u>해체계획서</u> 를 첨	<u>해체계획서(제5항</u>
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	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
야 한다.	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
	체계획서를 말한다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	5
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	
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	
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	
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	
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	
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

	제12호에 따른 빈집의 해체계
	획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